

제주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5856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5,500,602원과 그중 5,466,537원에 대하여 2024. 9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7.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,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,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)

판사 임재남

별지